#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31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김정호·전진숙·어기구

임미애 · 박희승 · 허종식

이연희 · 정성호 · 전재수

신영대 • 이수진 • 윤후덕

최기상 · 김남희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0월까지 총 631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으로 30% 정도의 녹색기술 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정비의 촉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 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8 신설).

#### 법률 제 호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8(녹색기술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
  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녹색기술 신제품 ·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하여 제10조의4제5항 또는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정비 과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과정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기술 신제품 ·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하려는 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8(녹색기술 신제품 • 서
	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또는 서
	비스(이하 이 조에서 "녹색기
	술 신제품 · 서비스"라 한다)
	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
	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
	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
	지를 준용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녹색
	기술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하
	여 제10조의4제5항 또는 제10
	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
	에 착수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 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 정비 과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 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 기술 신제품 · 서비스를 이용 하여 사업하려는 자를 선제적 으로 발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신속확 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